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6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	3
※ 참고자료	10
1. 순환골재 개요	10
2. 순환골재 관련 품질인증과 KS인증 기준 비교	11
3. 인증별 세부사항 비교	12
4.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KS인증 심사절차 비교	13
5.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조항	14

I. 제안경위

2024년 8월 5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

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

Ⅲ. 검토의견

1.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

개정안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63조제9호 및 제10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품질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삭 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삭 제>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생략)	제63조(벌칙) ----- -----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1.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순환골재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으로¹⁾, 건축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6조²⁾에 따른 제도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도로공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한편, 품질인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및 국토교통부 공고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품질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³⁾에 따른 KS인증제도(산업통상자원부 관할)와 유사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4) 2014년 및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 지적된 바 있음.

실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두 제도는 구재 아스팔트⁵⁾ 함량 등 품질기준은 유사⁶⁾하고, 그 외에 KS인증제도는 별도로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을 심사하여 품질기준 외에 추가적인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5) 구재 아스팔트는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6)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비교]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구 분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좌동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5 이하	좌동
최대 입경(mm)	13 이하	-
함수비(%)	5 이하	좌동
유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용적기준)	좌동
무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질량기준)	좌동

* 도로의 표층·중간층·기층에 사용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 도로보조기층용 >

구 분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소성지수 ¹⁾	6 이하	좌동
수정CBR치(%) ²⁾	30 이상	좌동
마모감량(%)	50 이하	좌동
모래 당량(%) ³⁾	25 이상	좌동
액성 한계(%) ⁴⁾	25 이하	좌동
유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용적기준)	좌동
무기이물질 함유량(%)	5.0 이하 (질량기준)	좌동

1) 소성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함수비의 범위로 클수록 자연건조가 어려우며 팽창이 심함

2) 노상토 지지력을 의미하며 표준하중강도 대비 시험하중강도

3) 사질토에서 점토, 가는 입자, 먼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

4) 소성상태가 액체상태로 변하는 한계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증제도 비교]

	순환골재품질인증	KS인증
해당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제도목적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생산 및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품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표준화된 제품 및 기술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 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안정성 확보 및 제품 구매시 품질 신뢰를 제고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법적근거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9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인증심사 기준	품질기준, 사업장 기준	품질기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등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기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유사인증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의 KS인증제도에 기반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두 제도는 품질기준이 유사하고, 특히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및 2020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인증제도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규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함에 더하여, KS인증제도를 통하여 품질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7) 국토교통부 용역: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순환골재 KS인증 및 품질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p.69

참고로, 전체 순환골재 업체 603개 중,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 업체 수는 409개(67.8%)이고 KS인증 취득 업체는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KS인증으로 통합될 경우 업체의 추가적인 기준 준수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 업체 수 등 ('23.12. 기준)]

구분	전체 골재업체 수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 업체 수 (비율)	KS인증 취득 업체 수 (비율)
합계	1966개	409개(20.8%)	15개(0.008%)
순환골재 업체	603개	409개(67.8%)	-
천연골재 업체	1363개	-	15개(0.01%)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동 개정안 대하여 법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KS인증제도로 통폐합하는 경우 기존에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품질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⁸⁾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는 KS인증체계의 원활한 이행 및 업계 준비 등을 위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확대 및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⁹⁾

8) (예시) 부칙 제2조(제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생산자는 이 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한국건설자원협회 수정건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품질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6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둘째, 개정안 제36조제2항의 ‘품질인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품질인증’ 약칭을 명시¹⁰⁾하거나,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¹¹⁾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관계부처 의견으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개정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자’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1,500만원(연평균 4,3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안 제36조)	7	33	49	59	67	215	43

주 1.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추계기간 중 순차적으로 KS 인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전환업체의 1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검사대상 업체의 수, 검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546

10) (예시) 안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1) (예시) 안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 참고자료 1: 순환골재 개요

□ 순환골재 개요

- (개념)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품질 기준(건설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맞게 만든 것



순환잔골재(5mm)



순환굵은골재(25mm)



순환굵은골재(40mm)

- (대상폐기물)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폐토석이 해당
 -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하려면 유해물질 함유기준(폐기물관리법) 및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용도별 품질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마련(국토부공고, 13개 용도)
- (품질인증)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과는 별도로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국토부령, 3개 용도, 사업장심사·품질검사로 구분)
 - ※ 품질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품질기준만 만족하면 순환골재로 재활용 가능

□ 순환골재 재활용

- (재활용)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한 순환골재를 용도 건설공사용·도로공사용·성복토용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
 - ※ (고부가가치 재활용) 순환골재를 성복토용과 같이 저급 용도가 아닌 콘크리트용과 같이 순환재활용(Concrete to concrete)할 수 있는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

구 분	순환 재 활용 (Circular recycling)	비순환 재 활용 (Spiral recycling)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 골재, 모래, 시멘트	콘크리트 → 성·복토재 등

※ 참고자료 2: 순환골재 관련 품질인증과 KS인증 기준 비교

□ KS인증 내 순환골재 기준은 현재 2가지가 있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용(KS F 2572)**과 **도로보조기층용(KS F 2574)**으로 구분

※ 콘크리트용(KS F 2573)은 기존 골재 품질기준(KS F 2527) 내의 순환골재 기준과 동일하여 폐지('19.6)

○ 아스팔트콘크리트용은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도로보조기층용은 **모든 항목 기준 동일**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구 분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좌동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5 이하	좌동
최대 입경(mm)	13 이하	-
함수비(%)	5 이하	좌동
유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용적기준)	좌동
무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질량기준)	좌동

* 도로의 표층·중간층·기층에 사용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 도로보조기층용 >

구 분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소성지수 ¹⁾	6 이하	좌동
수정CBR치(%) ²⁾	30 이상	좌동
마모감량(%)	50 이하	좌동
모래당량(%) ³⁾	25 이상	좌동
액성한계(%) ⁴⁾	25 이하	좌동
유기이물질 함유량(%)	1.0 이하 (용적기준)	좌동
무기이물질 함유량(%)	5.0 이하 (질량기준)	좌동

1) 소성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함수비의 범위로 클수록 자연건조가 어려우며 팽창이 심함

2) 노상토 지지력을 의미하며 표준하중강도 대비 시험하중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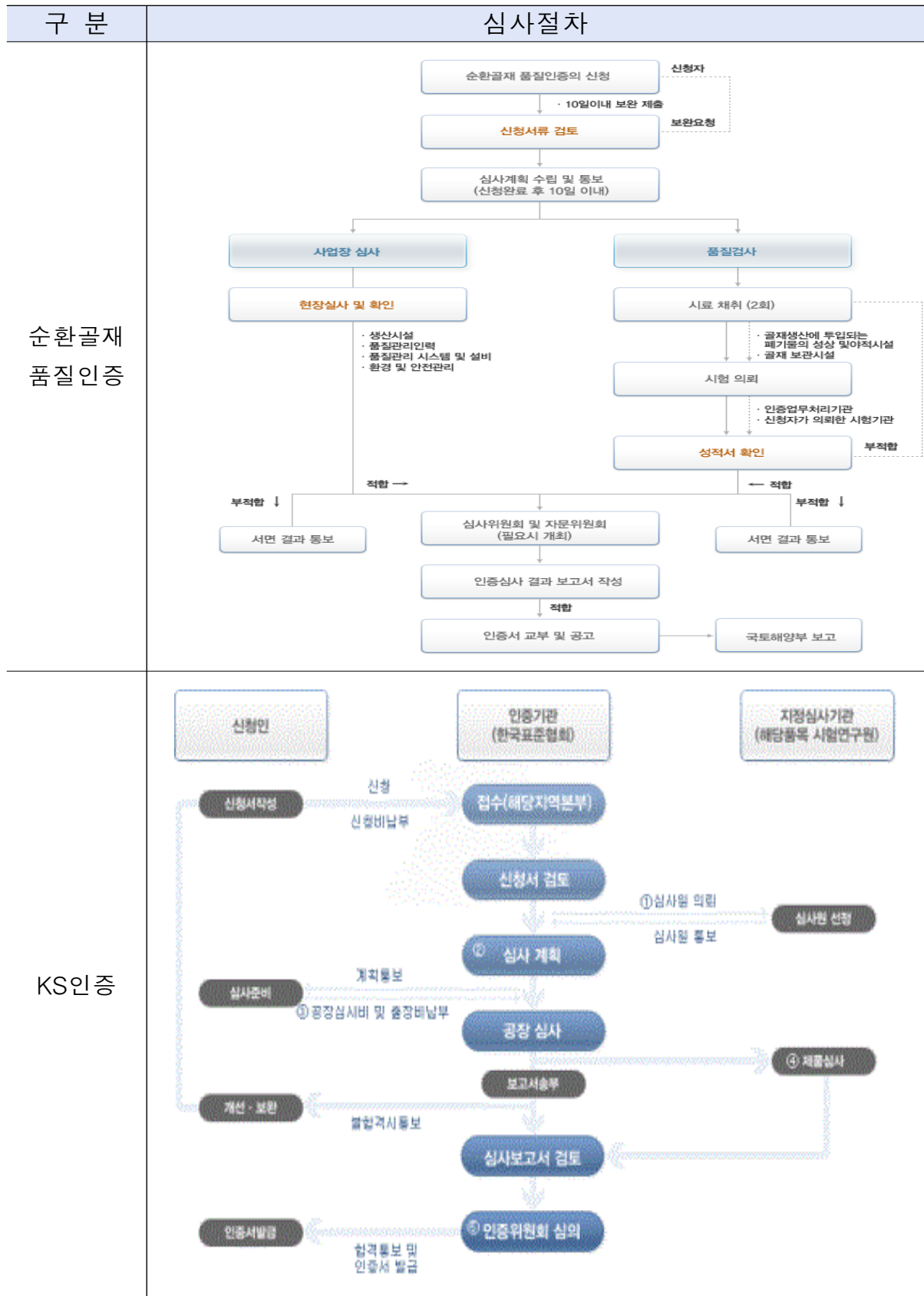
3) 사질토에서 점토, 가는 입자, 먼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

4) 소성상태가 액체상태로 변하는 한계치

※ 참고자료 3: 인증별 세부사항 비교

	순환골재 품질인증	KS인증
법적 근거	건설폐기물법 제36조(환경부) * 품질인증은 국토부 소관	산업표준화법 제17조(산업부)
개요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순환골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로 품질 인증	국가산업표준(KS) 중 일부를 인증품목으로 지정하고 품질 인증
인증 종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굵은골재, 잔골재) 도로공사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KS F 2572), 도로보조기층용(KS F 2574) * 콘크리트용(KS F 2573)은 골재 품질기준(KS F 2527)과 중복으로 폐지('19.6)
인증 현황 (2022년말)	610건(396개사)	14건(14개사) 내외 * 전부 천연골재를 활용해 콘크리트용 인증을 받은 것으로, 순환골재 인증 실적은 없음
인증 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부 위탁)	한국표준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심사 기준	(신규) 사업장심사*, 품질검사 *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설비·환경안전관리 등 국토부고시에 따라 진행 (사후관리/1년) 사업장 심사, 품질 검사	(신규) 공장심사*, 제품검사 * 경영·인력·환경 등 표준화, 자재관리, 공정관 리,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 관리 등 기표원고시에 따라 진행 (사후관리/3년) 공장심사(정기)
인증 여부 결정	인증기관에서 결정 * 인증기관과 KOLAS 시험기관에서 각 1회 제품 검사 실시 후 인증기관에서 결정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공동 실시 후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업장 (공장) 심사	최종 생산품 중심 *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환경 및 안전관리	생산 및 경영 시스템 중심 * 품질경영 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품질 (제품) 검사	순환골재 품질기준 항목 *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유기이물질, 마모감량, 알칼리골재반응 등 ** 인증기관, KOLAS 시험기관 등	KS표준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 *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유기이물질, 마모감량, 알칼리골재반응 등 ** 인증기관, KOLAS 시험기관
수수료	약 390만원 * 2개 용도 신청시 511만원, 3개 용도 신청시 627만원	약 243만원 * 수수료, 공장심사비, 출장비(2인) 합산이며, 품목 추가시마다 25만원
인증시 인센티브	적격업체 심사기준 가점 (0.5~1.4점)	용역조달 우선구매, 입찰계약 특례(지명경쟁 참가), 형식승인 등 면제

※ 참고자료 4: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KS인증 심사절차 비교



※ 참고자료 5: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조항

☐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 인증대상 및 심사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